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9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상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
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
성흠제, 신동원, 신복자,
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
이종태, 이효원, 임만균,
장태용, 채수지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,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(안 제16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하수도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호 “2명”을 “2명(다만, 주민대표가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.)”로 수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주민협의회 구성)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.</p> <p>1.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</p> <p>2.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, 국·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(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)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<u>2명</u></p>	<p>제16조(주민협의회 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명(다만, 주민대표가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.)</u></p>